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955
----------	-------

발의연월일 : 2025. 6. 20.

발 의 자 : 이학영·조계원·김성환
한정애·임호선·정태호
윤호중·최혁진·박민규
강득구·위성곤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있음.

그러나 정책 시행기관이 아닌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환경정책의 주무기관인 환경부를 통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와 이견이 있는 경우 별도의 조정 절차가 없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 실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대통령비서실의 기후환경정책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을 추가하고, 환경부장관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 검토의견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의견 조정 또는 중재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포함함으로써 부처 간 의견 조정과 중재를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강조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호의2 신설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의 기후환경정책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으로 한다.

제16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3조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 검토의견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의견 조정 또는 중재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① ~ ③ (생 략)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 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 부장관, <u>국무조정실장</u>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무원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 회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 ----- ----- <u>국무조정실장, 대통</u> <u>령비서실의 기후환경정책 업</u> <u>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u> -----
2. (생 략) ⑤ ~ ⑨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 결한다. 1. ~ 6. (생 략) <u><신 설></u>	제16조(위원회의 기능) -----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23조에 따른 환경부장 관의 <u>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u> <u>검토의견에 대한 관계 행정기</u> <u>관의 장과의 의견 조정 또는</u> <u>중재에 관한 사항</u>
7. ~ 14. (생 략)	7. ~ 14. (현행과 같음)